
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
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주택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
공영개발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규
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17조 제2항 제1호내지 제3호중 “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”
를 각각 “임대주택법 제12조”로 하고, 제8항을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- ⑧ 주택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
공영개발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규
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2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【별표5】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

8-1 일반원칙중

- “ ○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지적분할하여 단독 소유하거나 지적분할 없이 공유할 수 있으며, 지적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,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.” 를
- “ ○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서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성한 주택단지의 단독주택은 지적 분할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으며, 단독형집합주택 또는 3층이하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단독소유하되,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할 수 있다.” 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06. 4. 4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</u></p> <p>제13조 (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제17조(개발된 택지의 공급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,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건 설용지를 확보·공급하여야 한 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은 60만㎡이하의 사업지구 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<u>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</u>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임대 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을 건 설하기 위한 용지(이하 ‘국민임</p>	<p><u>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</u></p> <p>제13조 (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) ① ~ ③ (현행과 동일) ④ <u>주택법 제41조의3 제1항의</u> <u>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</u> <u>영개발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</u> <u>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규모 및</u> <u>종류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</u> <u>그에 따른다.</u></p> <p>제17조(개발된 택지의 공급) ① (현행과 동일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<u>임대주택법 제12조</u>----- ----- -----</p>

대주택건설용지'라 한다) : 공동 주택건설용지의 25% 이상

2.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3호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인 임대주택(85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한한다)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: 공동주택건설용지의 5%이상 (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제외 한다)

3.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3호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인 임대주택(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한한다)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 : 공동주택건설용지의 5% 이상

③ ~ ⑦ (생략)

<신설>

제24조(택지의 공급 등)

① ~ ② (생략)

2. 임대주택법 제12조

3. 임대주택법 제12조

③ ~ ⑦ (현행과 동일)

⑧주택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24조(택지의 공급 등)

① ~ ② (현행과 동일)

<p>③ 사업시행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지역(시·도단위로 구분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는 동일지역으로 간주한다)의 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
<p>④ (생략)</p> <p>【별표5】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</p>	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【별표5】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</p>
<p>8-1 일반원칙</p> <p>○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지적분할하여 단독 소유하거나 지적분할 없이 공유할 수 있으며, 지적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, 지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.</p>	<p>8-1 일반원칙</p> <p>○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서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성한 주택단지의 단독주택은 지적 분할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으며, 단독형집합주택 또는 3층이하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단독소유하되,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할 수 있다.</p>